

2020년도 제20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9. 16.(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박정인,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197호)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800건(안건번호 제2020-117779호~11855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17779호~117780호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서로이웃'한 계정에 한하여 음원 파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불법복제물이 실제로 전송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심의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게시자가 '서로이웃'에 한하여 음원 파일을 제공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바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17781호는 저작권자가 네이버 카페의 무료 '폰트 파일'을 신고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만 긴급한 행정조치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적 권리에 대한 행정권의 성급한 개입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797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한 59건(안건번호 제2020-3027호~3085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21개 안건은 가결하고, 나머지 38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30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1개 안건(3개 안건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성원영 전문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09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9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 5쪽의 민원 내용, 카페
명, 저작물명, 저작권자명, 가수명, 6쪽의 민원인명, 7쪽의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
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
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D, A, C 위원: 이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카페명, 민원 내
용, 저작권자명, 가수명, 민원인명 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CGV아트하우스', '일본 후지 TV', '프리비전 엔터테인먼트', '일본 NTV', '미국 Cinemax', '(주)소니픽쳐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미국 CBS', '미국 CWTV', 'Netflix',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미국 FOX'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C, D, A, B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9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80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 2020-117779호~118552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특히 법리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하급심 판례를 참

로 서로이웃 신청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해 새로운 불법복제물 이용자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심의대상 게시물을 '저작권 침해 정보'로 평가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다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해 경고의 시정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게시물 수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17779호, 11778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서로이웃한 계정에 한하여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채증자료가 없으므로 가결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이후 이러한 유형의 게시물들이 많아진다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B 위원: 해당 안전과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과의 차이점이 불법복제물 다운 받기 위해서는 블로거와 서로이웃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며, 유사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지?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에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링크 게시물은 한 번의 클릭으로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주소조차도 제공하고 있지 않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보시는 바와 같이 파일명만 제시하고 있음. 다른 문제점은 게시자가 서로이웃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알리고 있음. 만약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한다면 불법복제물 이용을 억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임. 현재 서로이웃인 계정은 여전히 해당 블로그를 이용 가능하고, 해당 블로거가 더 이상 서로이웃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기 때문임.
- D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보기에 어려움. 링크 주소나, 마그넷 주소가 있을 경우 바로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볼 수 있음. 블로거의 유인책 중 하나로 보임. 이용자들은 해당 목차를 보고 블로그에 방문한 것임. 하지만 실제로 불법복제물이 존재하는지는 모르는 상태임.
- B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라 함은 실제로 침해하고 있는 정보를 말하는 건지?
- 성원영 전문위원: 현재 심의위원회는 링크 설정 게시물처럼 방조 책임 또는 방조에 준하는 것에 한해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보고 있음. 이처럼 엄격하게 보는 이유는 '정보'라는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시정권고의 대상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B 위원: 해당 블로거가 편법을 이용하여 행정 조치를 피하는 것 같

음.

- C 위원: 부결 의견임. 본 위원은 시민단체와 함께 블로그를 9개 운영하고 있음. 서로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의 단계에서 교류를 충분히 한 후 서로이웃을 맺을 수 있음. 해당 블로그의 이웃은 현재 2,791명이지만 서로이웃한 계정의 수는 표시되어 있지 않음. 서로이웃한 계정의 수는 더 적을 수 있음.
- A 위원: 공지사항에는 서로이웃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현재 받고 있을 수도 있음. 페이크 모션일 수도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소명자료가 단 한건이라도 있다면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겠지만, 현재 불법복제물이 실제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 자료가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됨.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 C 위원: 네이버 블로그에서 서로이웃한 계정에 한하여 음원 파일을 제공했다는 의심만으로 소명 자료 없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경고의 시정권고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므로 부결 의견임.
- A 위원: 불법복제물이 실제로 전송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심의 위원회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가결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할 필요성이 있음.

- A 위원: 업로드한 날짜가 2014. 8. 1.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난 것으로 보임. 다른 이용자가 해당 게시물에 첨부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한 증거 자료가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없음.
- A 위원: 저작권자가 폰트 파일 이용허락 조건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 해당 안건이 제3자에게 무단 배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카페 이용자가 제3자인 다른 이용자에게 재전송한 것으로 보임. 민원인의 의사는 민원인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무료로 다운을 받으라는 것 같음. 유료이든 무료이든 다른 경로로 전송하거나 다운받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됨.
- D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유료와 무료 폰트가 모두 있음. 이용자들이 무료 폰트를 다운받기 위해 민원인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유료 폰트가 마음에 들어 구매를 할 수 있음. 일종의 유인책일 수 있음. 그런데 무료 폰트만 모아 다른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민원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을 것임. 원래 관리자가 산정한 범위를 벗어난 이용 행위임.
- B 위원: 어떠한 경우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본 사안이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경계선 상에 있다고 할 것임. 특히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시정

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음.

- A 위원: 해당 안건은 경우 긴급성은 없음.
- B 위원: 행정력이 구지 개입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안건은 권리자가 신고한 건임. 권리자가 아닌 제3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누군가 사이트에 올려놨다고 보호원에 신고한 경우가 있음. 보호원은 신고가 들어올 때 마다 권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고, 근거도 없음. 그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직접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않았음. 저작권은 사적인 권리 즉 재산권적인 측면이 있음.
- B 위원: 지금 설명은 권리자가 시정권고를 원치 않을 수도 있는 경우도 상정한 것임. 그러면 권리자가 원하면 시정권고를 무조건 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 부분에서 딜레마가 생김. 시정권고는 신청에 의한 행정조치가 아니고 직권에 의한 행정조치이기 때문임. 물론 민원인에게 저작권 보호 요청을 받아 그 의사를 적극적으로 존중하기는 하지만 민원 신청을 누가 했느냐 또는 권리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심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있음.
- A 위원: 행정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한계가 있음. 예를 들어 이와 같이 2014년에 업로드된 게시물에 대하여 한정된 행정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임. 불법으로 유통되는 최신영화에 행정 인력을 긴급하게 투입하여 불법복제물을 채증하고 심의하여 시정권고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임. 해당 안건의 경우 중점저작물이나 긴급 저작물에도 해당되지 않음.

- B 위원: 행정기관이 선후 관계 조사 없이, 사인의 권리회복을 위해 우리 심의위원회가 너무 성급히 개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공익적인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다면 행정조치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해당 안건이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임. 당사자 간 사적으로 해결하든지, 필요하면 민원인이 게시물 작성자를 고발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결로 판단하고 있음.

- C 위원: 부결 의견임. 민원인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회공헌과 나눔 정신의 실천을 위해서 해당 폰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음. 또한 민원인은 무료 폰트 파일을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 했다고 6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신고함.

- D 위원: 예를 들어 A 상점이 물건을 판매하면서 일부를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음. 무료로 나누어 주는 이유는 물건을 많이 판매하기 위함임. 그런데 무료로 나누어준 물건을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에서 무료로 준다면 A 상점의 판매 정책에 반하는 것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됨. 위원님의

최종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침해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어렵고 사적 권리에 대한 행정권의 성급한 개입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결 의견임.
- C 위원: 저작권자가 네이버 카페의 무료 폰트 파일을 신고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만 긴급한 행정 조치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부결 의견임.
- A 위원: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며,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결함이 타당함.
- D 위원: 게시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폰트 파일을 복제·전송한 이상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 파일의 복제물을 전송하는 행위도 저작권 위반하는 해당할 수 있는 점, 본 건의 경우 시정권고 조치가 저작권자의 게시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여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해당 안건에 대하여 3분의 심의위원이 부결 의견, 1분의 심의위원이 가결 의견이므로, 안건번호 제2020-117781호는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

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7782호~118552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출판물,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물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7983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물란'을 166 포인트에 판매함. mkv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영화 개봉일은 2020. 9. 17.로 현재 미개봉작이며, 유역비, 이연걸, 공리, 전자단 등이 출연함. 무예에 남다른 재능을 지닌 '물란'이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들 몰래 전장에 나가 진정한 전사로 거듭나는 어드벤처 액션 영화임.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8039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211 포인트에 판매함.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2020. 8. 5. 개봉하였으며, 황정민, 이정재, 박정민 등이 출연함. 2020. 9. 13. 기준 누적관객수 4,340,709명이며, 현재 극장 상영 중임. 청부살인 미션 때문에 새로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황정민과 그를 쫓는 무자비한 추격자 이정재의 처절한 추격과 사투를 그린 하드보일드 추격액션 영화임.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6,390원 구매, 11,000원에 대여 가능함.

(방송 '온앤오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8051호는 방송 '온앤오프'임. 모바일 웹하드에서 65 포인트에 판매 중임. 2020. 8. 22.에 방영한 17화를 제공함. 일상 속 내 모습(ON), '사회적 나'와 거리 둔 내 모습(OFF)을 있는 그대로 모두 보여주는 신개념 사적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임. 방영기간은 2020. 5. 2.부터 현재 20화까지 방영중임. 성시경, 조세호 등이 출연하고 있으며, 2020.

8. 8.에 방영한 15화가 2.8%로 최고 시청률임.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650원 대여 가능함.

(방송 '서울촌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8070호는 방송 '서울촌놈'임. 모바일 웹하드에서 95 포인트에 판매중임. 2020. 8. 16.에 방영한 6화를 제공함. 서울만 아는 서울 촌놈들이 동네 전설들의 고향에서 그들의 추억을 공유하며 펼치는 하드코어 로컬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임. 방영기간은 2020. 7. 12.부터 현재 10화까지 방영중임. 차태현, 이승기 출연하고 있으며, 2020. 8. 9.에 방영한 5화가 3.5%로 최고 시청률임.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650원 대여 가능함.

(영화 '태백권'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8112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태백권'을 162 포인트에 판매함. mkv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2020. 8. 20. 개봉하였으며, 오지호, 신소율, 정의욱 등이 출연함. 2020. 9. 13. 기준 누적관객수 2,018명이며, 현재 극장 상영 중임. 태백권의 전승자가 사라진 사형을 찾기 위해 속세로 내려왔다가 지압원을 차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예측불허 코믹 액션 영화로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0,000원에 구매 가능함. 제24회 BIFAN 경쟁 부문 공식 초청작임.

(음악 'When We Disco'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8453호는 음악 'When We Disco'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20포인트에 판매중임. mp3 파일로 제공함. 2020. 8. 12. 발매하였으며, 가수는 박진영, 선미임. 2020. 9. 13. 기준 멜론 차트 6위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17782호~11855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C, B, A 위원: 안전번호 제2020-117782호~ 118552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17782호~118552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117779호~117780호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제2020-117781호는 부결하고, 제2020-117782호~11855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19쪽부터 3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027호~3085호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21개의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고, 나머지 38개 안전{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30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1개 안전(3개 안전은 부결 사유가 중복)}은 부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0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0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9. 23.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박정인

위원 최승수